

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공고

서울특별시 노원구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2년 6월 일

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인원	근무기간	근무예정부서	담당직무 내용
정신건강 사회복지사	일반임기제 8급	1명	임용일로부터 2년	생활 보건과	- 정신건강증진사업 전반 업무 - 중증정신질환, 아동·청소년, 자살위험군 관리 -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정신건강사업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 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

※ 임용예정일 : 2022년 8월 중 (인사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)

2. 법령 근거

-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서울특별시 임기제공무원 인사실무

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

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)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 1. 공공기관
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

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

※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

－ 지역·연령·성별 : 제한 없음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

임용분야	임용등급	응시자격요건
정신건강 전문요원 (사회복지)	일반임기제 8급	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,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1.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		○ 우대요건 -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-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
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: 국내외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 등에서 임용 예정 직무 분야 근무 경력
- ※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※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
- ※ '경력'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, 시험요구일 현재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퇴사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

4. 보수 수준

-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에 의거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(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)]

(단위 : 천원)

구분	상한액	하한액
8급 (상당)	55,877	39,859

- ※ 연봉 외 급여는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및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※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에 한함) 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
(단,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22. 7. 4.(월). ~ 7. 6.(수) <3일간 09:00~18:00>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- ※ 퀵서비스 및 택배 등을 통한 접수는 하지 않음.
- ※ 우편접수는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해 유효함.

- 접 수 처 : 노원구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 (서울특별시 노원구 노해로 437)

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
※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
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.

○ 시험 일정

내 용	일 정	장 소
시험 공고	2022.6.23.(목) ~ 7.4.(월)	-
응시원서 접수	2022.7.4.(월) ~ 7.6.(수)	방문·우편접수
서류전형	2022.7.7.(목)	보건위생과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22.7.8.(금)	-
면접시험	2022.7.11.(월)	보건소장실
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2022.7.13.(수)	-
최종합격자 발표	※ 인사위 일정에 따라 추후 확정	-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(단,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 일정과 합격 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)

○ 시험 방법

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시험결과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제한할 수 있음(이때,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별도 설정·시행)

나. 2차시험(면접시험) : 시험결과 개별통보

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, 의사 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 및 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 가능성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평가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사위원회 임용 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.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

- 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 서류

작성 서류

○ **필수** 제출서류 및 증빙자료 목록 **(첨부1)** 1부

○ **필수** 응시원서 **(첨부2)** 1부

- 응시원서에는 응시수수료로 서울특별시 노원구 수입증지 부착

- ▶ 수입증지 판매처 : 노원구청 2층 재무과
- ▶ 응시등급별 수입증지 금액 : <5급> 10,000원, <6,7급> 7,000원, <8,9급> 5,000원

※ 수입증지 대신 '수입증지 구입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'를 응시원서에 부착하셔도 됩니다.

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**필수** 이력서 **(첨부3)** 1부

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 「<http://www.nhic.or.kr>」 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
○ **필수** 자기소개서 **(첨부4)** 1부

○ **필수** 직무수행계획서 **(첨부5)** 1부

○ **필수**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**(첨부6)** 1부

○ **필수**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**(첨부7)** 1부

○ **동의시**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**(첨부8)** 또는 **미동의시** 주민등록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) 1부

○ **선택**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**(첨부9)**

※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만으로 ① 근무 기간 및 ② 담당 업무 등 응시자격요건에 대한 명확한

증빙이 가능할 경우 제출할 필요 없음

증빙 서류

- **필수**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, 학위증서(석사 이상) 또는 학위증명서 1부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·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 - ※ 사본 제출 가능[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]
- **필수** 응시자격 관련 증빙자료(자격증, 면허증 등)
 - ※ 사본 제출 가능[단, 최종합격 시 원본(대조 확인용) 제출 필요]
- **필수**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(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 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)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 ※ 공고일 기준 최근3개월 이내
 - ※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 직무내용 기재가 안 될 경우 ‘경력사실 확인 증명서(첨부9)’ 추가 제출
 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**선택**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

- ▶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▶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,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해 인정
- ▶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.

-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 다만, 시험 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적격한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노원구 보건소 보건위생과(☎ 02-2116-4311)

직무기술서

【생활보건과 정신건강전문요원 (일반임기제8급)】

임용예정기관명	근무예정부서
서울특별시 노원구	보건소 생활보건과

주요업무	○ 중증정신질환, 자살위험군 및 유족 정신건강 평가 및 사례관리 ○ 아동·청소년 정신건강 평가 및 사례관리 ○ 정신건강교육, 프로그램 운영 및 기타 정신건강증진사업
------	---

필요역량	○ (공통 역량)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, 정신건강복지법 ○ (직급별 역량) 팀 사업계획 및 팀원 관리 ○ (직렬별 역량) 정신건강전문요원 업무 수행능력
------	--

필요지식	○ 정신건강복지법 및 자살예방법 ○ 정신의학용어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○ 사회복지자원 및 지역사회 기관에 대한 이해
------	--

응시 자 격 요 건	임용분야 : 정신건강전문요원	
	자격증	○ 「정신건강복지법」에 의한 정신건강사회복지사
	경력	○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○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○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- 국내외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법인 등에서 임용예정 직무분야 근무 경력
	우대 요건	○ 정신건강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○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